

창원지방법원 2023. 2. 8 선고 2021가단112485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(개명전 이름: B)

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광필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12. 21.

판 결 선 고 2023. 2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28,825,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1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28,825,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1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6444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, 위 법원은 2019. 11. 28. D을 상대로 원고에게 3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9. 7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(이하 ‘이 사건 판결금 채무’라 한다).

나. D의 배우자인 피고는 2020. 10. 27. 원고에 대하여 D의 이 사건 판결금 채무 334,000,000원을 연대보증(이하 ‘이 사건 연대보증’이라 한다)하였다.

다. 피고 또는 D은 2020. 6. 9.부터 2021. 11. 8.까지 원고에게 별지 총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0,500,000원을 변제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위 기초사실 및 인정근거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. 한편 피고 또는 D이 원고에게 합계 260,500,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, 이를 이자, 원본 순으로 변제충당하면,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128,825,463원(별지 총당액 계산표 ‘원금 잔액’ 중 마지막 변제일의 금액)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 날인 2021. 11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판결금 채무에 따른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(한편, 원고는 위 최종변제일 당시 원금 잔액이 128,825,476원이라고 주장하지만, 별지 총당액 계산표 기재의 계산 내용과 다르므로 앞서 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).

나. 이에 대해서 피고는 앞서 본 변제금액 외에도 2020. 12. 1. 500,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, 스스로 영수증을 분실하였다고 하는 등 위 변제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

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8,825,463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 날인 2021. 11.

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장재용

별지